

수석부회장선출규정

제 정: 2011.12.19.(이사회 승인)

최근개정: 2025.06.16.(이사회 승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15조①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석부회장의 선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 수석부회장 후보는 학회 가입 후 7년이 경과한 정회원으로 평의원이면서 학회 임원을 역임하고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 (선출방법) 학회의 수석부회장은 해당 순차 분과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사회 의결 후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① 다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득표순으로 결정한다. 현장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학회는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독립적 활동이 보장된 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회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회 선관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 ① 현행 4개 분과에서 전기신호분과, 정책운영분과, 차량기계분과, 제도토목분과 순서로 순환하면서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만약 특정 분과가 학회 총권리회원 수(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의 40% 이상을 1순환주기인 4년 동안 유지하면 연속하여 2회 추천할 수 있다.
- ② 해당 순차 분과는 2인의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③ 해당 순차 분과의 위원장은 학회 선관위가 주관하는 해당분과 권리회원 투표로 선출된 2인을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만약 지원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해당 순차 분과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하면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순차 분과로 추천권을 넘긴다.

제5조 (수석부회장 선출)

- ① 이사회 의결
해당 순차 분과에서 추천된 후보명단과 학회 선관위의 보고를 토대로 평의원회 투표 회부 건을 의결한다. 의결은 학회 정관 제21조(회의의 의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만약 추천된 후보가 1인일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평의원회 선출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평의원회의 수석부회장 선출
이사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수석부회장 후보는 전체 평의원의 다수결 투표를 거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만약 추천된 후보가 1인이고 평의원회 선출투표가 생략되었으면 평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은 학회 정관 제21조(회의의 의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총회 인준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후보를 대상으로 한 수석부회장 인준은 학회 정관 제21조 (회의의 의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위 상기 선출 절차에서 부결되는 경우, 해당 순차 분과에 속한 후보를 재추천받아서 상기 선출 절차를 반복한다.

제6조 (수석부회장 선출 일정)

수석부회장 선출의 일정은 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모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11.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9.3.18.)을 받은 다음날(2019.3.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9.)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의 개정일은 2019년 8월 19일(이사회 승인) 이다.

제2조 (시행일) 위 개정일(2019.8.19.)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9.9.6) 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기 개정일 및 시행일(2025.06.16.)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이 규정 제2조(수석부회장 후보 자격)의 적용은 2026년부터 선출하는 수석부회장부터 적용한다.